

사회적경제 가이드북

Contents

-
- 1부.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이해 -----
 - 1. 사회적경제의 이해
 - 2. 사회적경제와 마을의 만남, 마을경제
 - 2부.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
 - 1.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 2.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전략
 - 사업진입단계
 - 사업경영단계
 - 3부. 협동조합 알아보기 -----
 - 1.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 2. 협동조합 7원칙
 - 4부. 사회적경제 관련 인증 및 지원제도 -----
 - 1. 사회적기업
 - 2. 마을기업
 - 3. 자활기업
 - 4. 소셜벤처
 - 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소개
- ※ 교육 및 컨설팅 안내



1부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이해



■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주체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단체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공정무역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

공유경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사회적경제와 마을의 만남, 마을경제를 생각하는 이유

■ 사회적경제는 원래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속임수와 바가지요금 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처음부터 동네주민들이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는 우리 마을 살림살이(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을 찾아 외국에 공장을 짓거나 외주업체에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적정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사와 직원의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 소비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합니다. 대기업의 물건을 구입하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본사에 지분이 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 마을이 함께 부자가 됩니다.

■ 마을은 사회적경제가 활동할 생태계가 됩니다.

2부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및 사례

○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전략

① 사업진입단계

- 구성단계(초기구성원, 사업아이템 개발, 시장조사) / 소셜미션
- startup 단계(사업아이템 선정, 시범사업, 조직구성, 비즈니스모델 설계)

② 사업경영단계

- 사업성 분석 및 개선: 아이템분석, 손익계산, 이해관계자 및 시장분석
- 조직분석 및 개선 : 의사결정구조, 인적·물적·사회적자본 관리, 내부혁신체계

3부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단체

■ 협동조합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살고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산업혁명의 시기에 상인들은 물건을 속여팔기 일쑤였습니다.

“밀가루에 흙을 섞어서, 양초두께는 늘 믿을 수 없었으며, 10개짜리 버터묶음을 사면, 밀에 7개 정도는 3년 동안 소금에 절여 놓은 걸 속여서 팔았다. 주민들은 가게에서 언제나 주인들과 실랑이를 해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1파운드(약 1천 7백원)씩을 모아 직접 생필품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9개의 물건을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팔았으며, 가게 운영은 28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도맡아 했습니다.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이야기는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후에 더욱 발전하여 제분공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협동조합의 특징

사업범위	의결권	책임범위	가입, 탈퇴	배당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투자금액만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직원협동조합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필요하고 정당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저자,
George Jacob Holyoake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성, 인종, 종교, 정파,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많은 금액을 출자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배분합니다.

-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조적으로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며, 만약 외부와 약정을 맺거나 자본을 조달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6. 협동조합간의 협동

- 세계경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만의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합니다.

4부

사회적경제 관련 인증 및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

※취약계층 -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 고령자
- 장애인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갱생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등
- 범죄구조 피해자
- 보호관찰 청소년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 (수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②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③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및 지원기관) ④ 심의 및 인증(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중 2회 공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집공고(서울시) ② 신청/접수(자치구) ③ 현장실사(자치구/지원기관) ④ 심사/선정/지정(서울시)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6개월 이상 ①조직형태 (상법 상 회사, 협동조합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청산 및 해산 시 2/3 재투자 포함	* 3개월 이상 ①조직형태 (상법 상 회사, 협동조합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⑥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청산 및 해산 시 2/3 재투자 포함
지원내용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시설비 등 지원 ④세제 지원 ⑤사회보험료 지원 ⑥전문위력 채용 지원 ⑦인건비 지원 ⑧사업개발비 지원 ⑨모태펀드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기관 별 차이 있음) ③인건비 지원 ④사업개발비 지원 ⑤모태펀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담당부 서나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신청	상시접수	연중 1~2차 지원공고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혼합형	•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유형별 세부 인증요건

1) 일자리 제공형

-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6개월 동안 50% 이상(16.12.31.까지는 30%)
 -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제공
-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 서비스 2. 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6. 직업안정법 제 2조의 2, 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P,Q,E,R,N,S,T,A 중 해당 하는 업종일 경우에만 인증신청 가능</p>
--------------------------------------------------------------------------------------------------------------------------------------------------------------------------------------------------------------------------------------------------------------------	-----------------------------------------------------------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6개월 동안 50% 이상(16.12.31.까지는 30%)
 -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은 일자리제공형의 취약계층 이외에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7~10등급)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기준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 ※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30%이상 (16.12.31.까지는 각 20% 이상)

4)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16.12.31.까지는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5) 기타형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
 - 조직의 설립취지
 -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 지역사회 기여·공헌도
 -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마을기업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 매년 초 지원공고를 통한 선정 (시·군·구 단위 접수)
- 2년 간 최대 8천만 원 사업비 지원 (1차년도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한도)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및 마을기업의 발전 도모
- 마을기업 설립에 참가하는 주민 5명 이상이 입문·기본교육 및 심화교육(팀워크숍) 등 필수교육시간 24시간 이수



■ 마을기업의 요건

1)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2)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회원은 5인 이상)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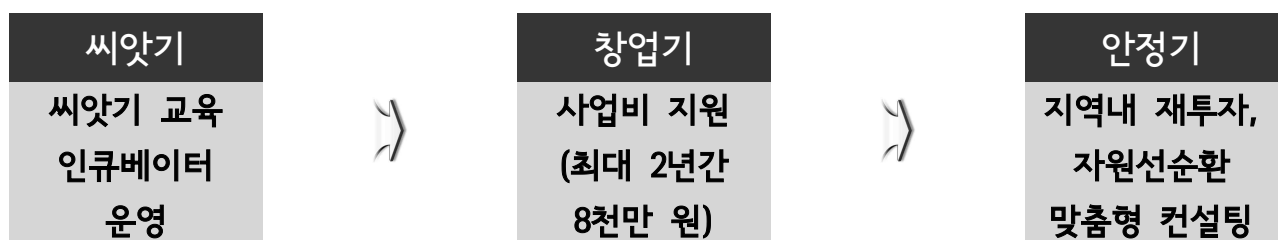
3)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4)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육성 · 지원 체계



자활기업

■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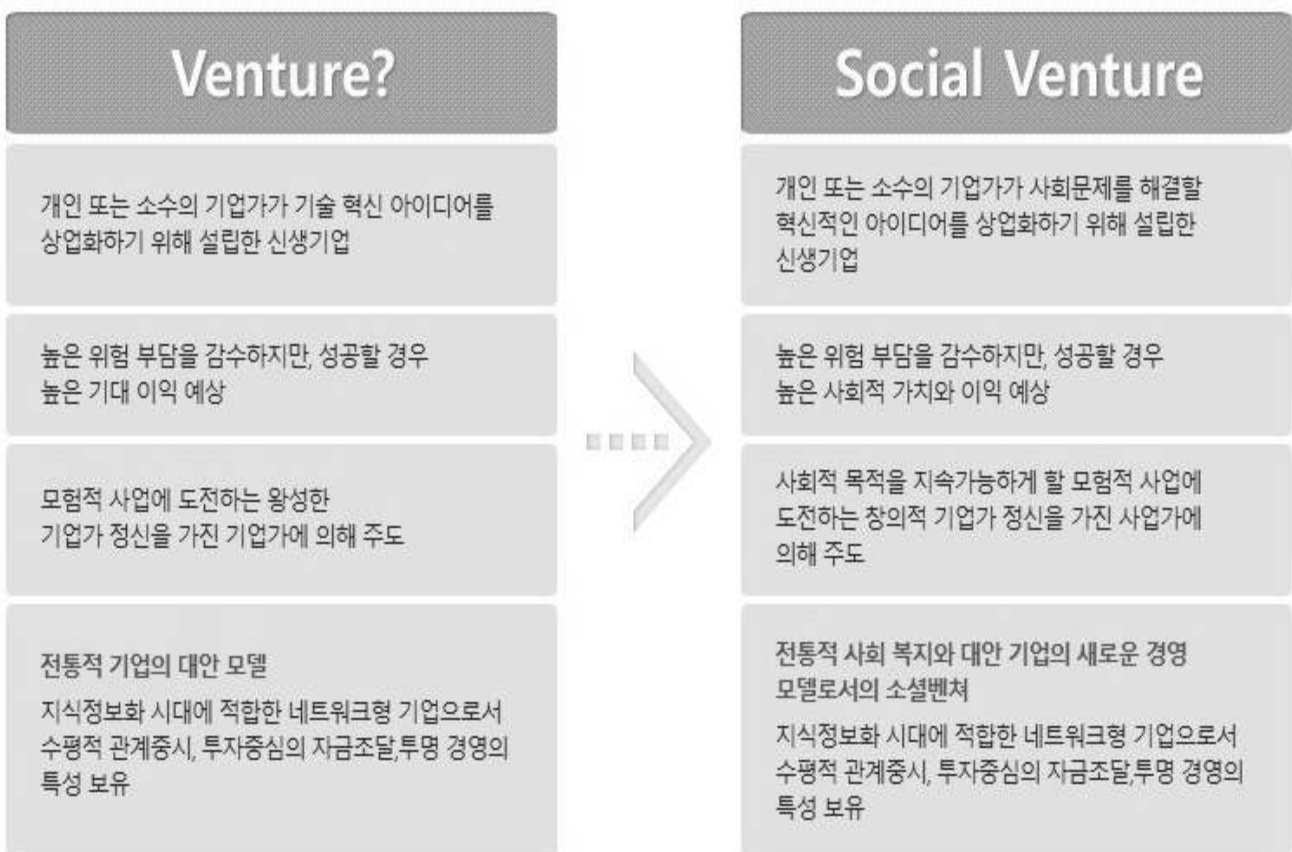
■ 자활기업의 지원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소셜벤처

■ 소셜벤처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 소셜벤처는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업 활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어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한다.



■ 소셜벤처 경연대회

-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 및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경진대회
- '09년 ~ 13년, 총 3,055개팀 참여
- 아이디어 검증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까지 one stop으로 연결되는 사회적기업가로의 등용문
- 참가 부문 및 특전

참가부문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성장
포상 및 특전	대상(1팀)	장관상 상금 300만원	장관상 상금 1,000만원	장관상 상금 2,000만원	장관상 상금 1,000만원
	최우수(2팀)	장관상 상금 각 150만원	장관상 상금 각 500만원	장관상 상금 각 1,000만원	장관상 상금 각 500만원
	우수(3팀)	진흥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30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50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300만원
	장려(6팀)	진흥원장상 상금 각 5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200만원	진흥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

※ 창업 부문 권역 대회 입상자의 경우,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사전 선발소셜벤처 경연대회 포상 및 특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안내(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신청기간 : '16. 2. 15 ~ 9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요건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登記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登記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부부 또는 직계 준비속 등 가족이 협동조합 구성비율의 30% 미만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조합의登記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금융업 등
 - ※ 참고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우대사항

- (청년협동조합)조합원의 50% 이상이 청년(만39세 이하)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자부담 비율 우대(15%) 및 현장평가 가점부여
- (고용창출)고용창출 우수 조합의 경우 현장평가 시 가점부여
- (우대업종)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아래 표는 우대업종

구 분	업 종	구 분	업 종
대 기 업 침해업종	의류점, 제과점, 자동차정비, 식료품소매, 문구서점, 화장품, 음식/외식업(한식,중식 등)	생활 생계형	가구점, 이미용, 세탁업, 벽지장판, 꽃가게
비중높은 소 공 인	제조업(봉제,의류,수공업 등), 철물점	고부가 가치	사진관, 공예점, 안경점, 광고업, 디자인, 장례예식

□ 지원요건 - 의무교육과 자부담

- 선정 후, 조합원 30%이상(등기임원 2인 이상 포함)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 총 12시간(필수교육 3시간, 선택교육 9시간) 의무교육
 - * 기존 지원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과거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조합원 30%이상이 교육 수료
 - *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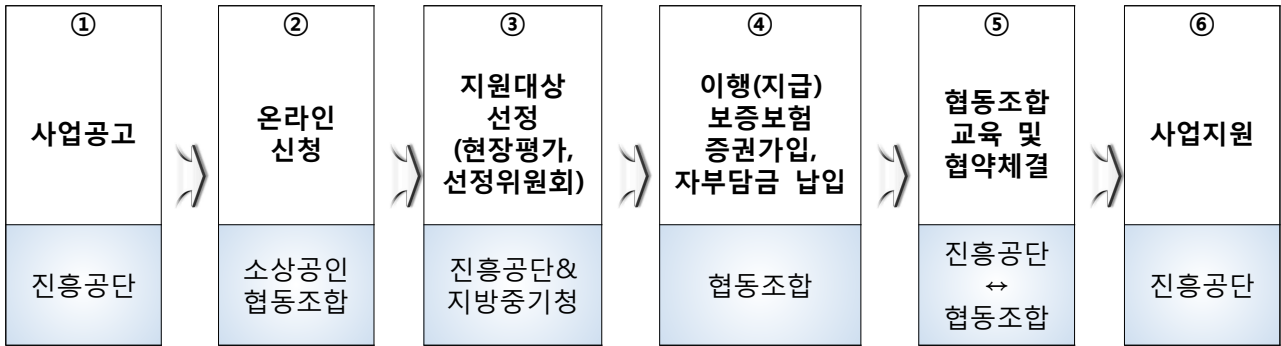
-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 협동조합 자부담금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 *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
 - *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VAT(10%)는 협동조합 부담

□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 지원분야, 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자부담 비율	비고	
공동 장소임차	공동사무실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10,000	(일반) 20% (청년) 15%	선정 이후 '16년12월분 까지 가능	
	공동작업장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공동판매전시장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공동 설비	설비 및 장비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 유통에 부적합한 승용차, 효율성이 미흡한 밴·승합차 지원제외 *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과 단순 사무용 기기 지원제외 *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 (전선, 배수관 등) 허용	100,000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 (5년간 유지)
공동 R&D	프로세스 개발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시스템, 협업사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도서관리 등) 등	30,000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공정개선 연구 개발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공동 브랜드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20,000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공동 마케팅	광고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1년차 조합)			신규조합과 기존조합 차등지원
	행사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50,000			
	홍보물 제작	▪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2~3년차 조합) 70,000			
공동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20,000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지원절차



교육 및 컨설팅 문의 안내

- 광진구 내의 창업 준비자·기업체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내방 등)

- 문의 :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02)450-7059 이메일:hy5240@citizen.seoul.kr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353-3553 / <http://sehub.net>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1544-5077 / <http://www.15445077.net>
 - 신나는 조합
365-0330 / <http://www.joyfulunion.or.kr>